

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(멘토링) 연장 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의 성장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「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멘토링 지원사업 연장 공고」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1 사업요약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-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멘토링 지원사업
접수기간	- 공고 시 ~ 10. 12.(월)17:00(선착순 모집) ※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현황에 따라 예정된 공고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음
지원대상	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-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, 하갈동, 구갈동, 서천동, 농서동, 동백동, 중동, 연남동, 청덕동에서 사업 영위 - 주업종 코드가 C26, C28, C29
모집규모	- 7개사 내외 ※ 지원기업 수는 신청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내용	- 기업별 멘토링 최대 4시간
신청방법	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622)
사업기간	- 선정일 ~ 사업완료(10.16.(금))까지 추진 ※ 사업기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(연장)될 수 있음

□ **추진일정** ※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신청접수	서류검토 및 선정기업 통보	멘토 매칭, 사업수행	지급처
소상공인24 시스템 접수	제출서류 검토 선정기업 통보 및 사업수행 안내	멘토 매칭, 멘토링 진행 (온/오프라인)	멘토링 일지 등 완료서류 접수 및 지원금 지급
10월	10월	10월	10월

2

지원자격

☐ 신청자격: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

-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, 하갈동, 구갈동, 서천동, 농서동, 동백동, 중동, 언남동, 청덕동에서 사업을 영위
- 주업종 코드가 C26, C28, C29에 해당되는 소공인
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
C28	전기변환·공급·제어장치, 일차전지, 케이블, 전구조명장치,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
C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

※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소공인으로 인정하여 지원가능

※ 제조업 여부는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 제조업 매출(제품매출)이 상품 매출이나 기타 매출보다 비중이 높은 경우

☐ 신청제한: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

구 분	세부내용
참여제한	○ 정부·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세금체납	○ 국세/지방세 체납,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부도/휴·폐업	○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허위서류	○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기타	○ 기타 관련 법령,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
3

지원내용

☐ 상세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최대 지원범위	제출 결과물
소공인 멘토링	▸ 소공인의 기술, 행정, 경영, 마케팅, 판로개척 등 희망 분야 (온/오프라인 진행)	기업별 멘토링 최대 4시간	(멘토 제출분) - 결과보고서 (멘토링 일지, 사진 등)

※ 단, 1일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하며, 최대 4시간까지 멘토링 가능 (시간당 10만원)

☐ 사업기간: 선정 통보일로부터 10. 16.(금)까지

※ 사업기간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(연장)될 수 있음

☐ 지원규모: 7개사 내외

※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, 멘토에게 지급

□ 멘토: 기업이 희망하는 멘토 선정 후 신청서 접수

※ 단, 희망 멘토가 없을 시 전문가 매칭을 위해 '신청서'에 세부 멘토링 희망분야 및 내용 자세히 작성

(예시) 해외시장진출: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관련 멘토링 희망

4 사업 신청

□ 신청방법

○ 공고 및 신청기간: **공고 시 ~ 10. 12.(월) 17:00(선착순 모집)**

※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현황에 따라 예정된 공고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음

○ 접 수 처: 소상공인24(<https://www.sbiz24.kr/#/pbanc/622>)

※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

□ 문 의: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윤진상 선임(yjin3@ypa.or.kr / 031-8067-5023)

□ 제출서류 목록

구분	붙임 번호	제출서류	부수	참고사항	발급처
필수 제출	1	지원신청서	1	· 누락없이 작성	해당서식
	2	멘토링 전문가 신청서 (희망 전문가 있을 시)	1	· 멘토가 작성 (단, 진흥원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가의 경우 생략 가능)	
	3	추진계획서	1	· 지원 필요성	
	4	주업종확인서	1	· 주업종(코드) 기준으로 작성	
	5	사업신청 동의서	1	· 기업 직인 날인 권고	
	6	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	1	· 기업 직인 날인 권고	홈택스
	7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1	·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	
	8	중소기업확인서 [소기업(소상공인)]	1	· 확인서 내 소상공인 명시 必 ·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시 ▶ 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 4대보험 가입자 명부 · 공고일 이후 발급분	
	9	주업종 조회화면	1	· 첨부파일 [참고1]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고	
	10	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1부	· 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	홈택스 및 정부 24

5

지원기업 선정

- ☐ 서류검토: 제출한 신청서와 추진계획서,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
- ☐ 선정방법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기준 충족 시 선정(선착순)
 - 신청서, 사업장 위치 및 영위 여부, 업종코드 등

6

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

- ☐ 완료서류 제출
 - 완료서류 작성 방법, 양식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추후 별도로 정함
 - 제출한 완료서류를 토대로 사업완료 여부 결정
- ☐ 지원금 지급 방법
 -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완료 여부 결정 후, 멘토에게 지원금 지급

7

유의사항

- ☐ 신청일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에서 제외
- ☐ 사유 없이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진흥원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☐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☐ 공고문, 기타 발송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☐ 선정평가 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 조정할 수 있음
- ☐ 지원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시 예비순위를 발표 할 수 있으며, 사업운영 기간 중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
- ☐ 본 공고문이 진흥원 규정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지침과

상충되는 경우 진흥원 규정과 설치·운영 지침 내용을 우선 적용함

- ☐ 사업 종료 후 기관 결과 보고를 위해 기업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 - ☐ 당초 추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유선,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함
 - ☐ 사업중단 및 실패에 대한 제재사항은 [참고1]의 기준을 적용함
- 끝.